

정보보호 강령

글로벌 보안 요구사항과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에 따라 새롭게 파생되고 있는 각종 위협들은 주식회사
독립자(이하 "회사")의 주요 자산인 정보시스템과 정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었으며 정보보호
활동은 회사의 생존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되었다. 따라서 전 임직원은 다음에 제시하는
정보보호정책을 기초로 정보자산의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첫째, 임직원은 정보를 보호해야 할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하고 취급해야 한다. 중요 정보 자산에 대한
접근 시 사용자 식별 및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고, 부서장의 승인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공개해서는 안
된다.

둘째, 전 임직원은 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보보호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각자의 직무와
부합하는 적절한 수준의 정보보호 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한 정보보호 활동과 관련 포상 및 처벌 기준을
공정하게 수립하여 시행함으로써 정보보호 활동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여야 한다.

셋째, 정보보호와 관련된 모든 정책 및 지침은 자산에 대한 기밀성·무결성·가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수립되어야 하며, 이러한 일련의 활동들은 정보보호 담당부서에 의해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넷째, 회사의 자산은 그 가치와 중요도에 따라 등급을 분류하여 각 등급별로 적절한 절차에 의거
관리되어야 하며 주기적으로 자산의 가치를 재평가하여 정보보호 정책 및 지침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섯째, 회사의 정보자산은 인가된 인원에만 한하여 접근 가능하도록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하며 중요
정보자산을 운영·관리하는 지역은 비인가자의 접근, 정전, 화재, 수해 등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여섯째, 회사의 정보 자산이 침해사고 및 내·외부자의 고의적이거나 우발적인 침입에 의해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도 회사는 사업을 지속할 수 있어야 하며 신속히 정보 자산을 복구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침해사고 대응계획이 수립되어 관리되어야 한다.

일곱째, 회사 정보시스템의 운영은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히 분배되어야 하며 사전에 정의된
절차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또한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기록을 유지·관리함으로써 향후
정보시스템의 운영 계획의 수립 및 침해사고 발생시 그 기록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여덟째, 유해한 소프트웨어로부터 회사의 정보시스템을 보호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정보시스템 사용으로 인하여 정보자산이 외부로 유출되거나 정보시스템의 성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아홉째, 회사의 모든 정보보호 활동은 지주회사의 관련 지침과 지적재산권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준수해야 하며 정보보호 활동이 지침과 절차에 의해 올바르게 수행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점검되어야 한다

전 임직원은 반세기 역사를 가진 GC 녹십자의 성공적인 정보보호 활동이 세계적인 기업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지름길임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정보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